국제 기준 제정기구와 지역 사무소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소재지 없는 회원 자격

금융 분야의 글로벌 기준 제정기구들은 유럽에 있습니다.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의 후신으로 2009년 4월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이 운영을 지원합니다.[1]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도 바젤에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파리에서 활동합니다. 이들 기구 중 어느 것도 중요한 기능을 싱가포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규칙에 대한 싱가포르의 영향력은 회원 자격에 기반합니다. 싱가포르는 FSB의 회원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회원을 확대한 2009년 9월부터 그 회원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IOSCO 회원이자 집행 협력에 관한 IOSCO 다자간 양해각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서명 기관입니다. 2010년 6월에는 IAIS의 상응하는 양해각서에 열 번째로 서명했습니다.[2] 싱가포르는 1992년부터 FATF 회원이며, 이 회원 자격이 갖는 의미는 제H편 제III장에서 살펴봅니다.[3]

전문성을 통한 영향력

기술 그룹을 통해 일하는 기구에서는 회원 자격만으로 얻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공무원들에게서 나옵니다. MAS는 이 분야, 특히 지속가능금융에 투자해 왔습니다. MAS는 2017년에 설립된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의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기준에 대한 IOSCO의 평가를 준비한 기술전문가그룹을 공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역내 차원에서 MAS는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ASEAN Taxonomy Board)의 부의장이며,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보다 엄격한 '플러스 기준(Plus Standard)'을 개발한 작업반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4] 이 작업의 실질적 내용은 제K편 제II장에서 다룹니다.

이 전략은 소국에 적합합니다. 싱가포르 규모의 나라는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비중으로 주도권을 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안의 질과 공무원의 역량을 통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문성에 기반한 영향력이 생기는데, 이는 대규모 기관 소재지 네트워크보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아마도 더 오래갈 것입니다.

세계은행그룹 허브

싱가포르에 있는 가장 비중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세계은행그룹입니다. 세계은행과 이 도시의 인연은 오래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963년 영국의 보증으로 첫 세계은행 차관을 받았고, 1966년 8월 3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의 10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싱가포르는 주로 수도, 항만, 전력 인프라를 위해 14건의 차관을 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1980년대 중반까지 모두 상환되었습니다.[5] 이렇게 과거의 차입국이 유치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역 및 역내 파트너와의 지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싱가포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2011년에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가 합류했고, 2015년 이 체제는 세계은행그룹–싱가포르 인프라·도시개발 허브(World Bank Group–Singapore Hub for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가 뒤따랐습니다. 현재 이 허브에는 세계은행, IFC, MIGA, ICSID의 직원 300명 이상이 근무합니다. 세계은행은 이 허브를 그룹 전체가 입주한 워싱턴 밖의 처음이자 유일한 사무소라고 부릅니다. MAS는 2011년의 체제를 워싱턴 밖에서 이러한 종류로는 처음인 세계은행그룹 통합 사무소라고 설명합니다.[6]

이 허브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 중심지에 중요합니다. IFC와 MIGA는 아시아 전역의 민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보증을 제공하며, 이는 싱가포르의 은행, 로펌, 자문사에 거래 업무를 가져다줍니다. ICSID는 이 도시를 투자조약 중재와 연결하는데, 이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워싱턴, 파리, 헤이그와 경쟁합니다(제F편 제II장 참조). 2026년 8월 26일 에드윈 통(Edwin Tong) 법무장관이 개소한 ICSID 싱가포르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 역할을 하며, 워싱턴 밖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ICSID의 첫 사무소입니다.[7] 마지막으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이 허브는,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가 구조화되고 자금이 조달되는 장소가 되려는 싱가포르의 포부와 맞아떨어집니다. 정부는 자체 기관을 통해서도 이 포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8]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법률 및 집행 기관

금융 이외 분야의 여러 기구도 금융 중심지의 법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무소를 싱가포르에 두기로 했습니다. 196개 회원국을 둔 인터폴(INTERPOL)은 2015년 4월 연구개발 시설이자 디지털 범죄 수사 협력의 장으로서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단지(Global Complex for Innovation)를 공식 개소했습니다.[9] 사이버 기반 사기와 자금세탁에 대응하는 은행들에게 이 단지는 싱가포르 경찰과 해외 상대 기관 사이의 통로를 제공하며, 이 주제는 제H편 제V장에서 다룹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아세안 지역을 담당하는 싱가포르 사무소를 운영하며, 그 안에 중재·조정센터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10]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2010년대 말부터 유치국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사무소를 운영해 왔으며, ICC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이 도시의 사무소에서 사건을 관리합니다.[11] 분쟁 해결에서 이들 사무소가 갖는 의미는 제F편 제II장과 제III장에서 검토합니다.

민간 기준 제정기구와 업계 단체

현대 금융의 세부적인 규칙 제정 상당 부분은 민간 협회가 수행합니다. 이들의 문서는 많은 공적 규칙 못지않게 시장을 형성합니다. 1985년부터 활동해 온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는 79개국 1,000개가 넘는 회원 기관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장외파생상품 대부분을 규율하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합니다.[12] ISDA는 2027년 4월 싱가포르에서 제41차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회는 회원을 따라갑니다. 글로벌 은행들의 지역 본부가 싱가포르에 집중됨에 따라, 이들을 대표하는 협회의 지역 사무소도 싱가포르에 집중되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유치를 위한 법적 틀

국제기구 유치의 법적 근거는 국제기구(면제 및 특권)법 1948(International Organisa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Act 1948)입니다. 이 법은 식민지 시대의 법률로, 독립 이후 개정을 거쳐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명령으로 기구, 그 직원, 그 시설에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대개 본부 협정이나 유치국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13]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의 제F편에서 설명하듯이, 스위스의 유치국법(Host State Act)은 특권, 면제, 재정 지원을 하나의 법정 프로그램으로 묶고 있지만, 싱가포르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유치 정책은 개별 협정, 사안별로 협상되는 세제상 취급, 그리고 이 도시의 전반적인 매력에 의존합니다.

주

1. Wikipedia, “Financial Stability Board”(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금융안정포럼의 후신으로 2009년 4월 설립; “the board is based in Basel, Switzerland”, BIS가 운영 및 재정을 지원; 싱가포르가 회원으로 기재됨. ↩

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nternational Cooperation”(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ingapore is a member of the FSB and participates actively in its various committees and work groups”; “a member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since September 2009”;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nternational Cooperation”(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AS is a member of the IOSCO”이며 IOSCO MMoU 서명 기관; “MAS is a member of IAIS”이며 2010년 6월 “accepted as the 10th signatory to the IAIS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nternational Cooperation”(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ingapore has been a member of the FATF since 1992.”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llaborations”(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Established in 2017, the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 “MAS i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NGFS”; MAS는 ISSB 기준에 대한 IOSCO의 승인 가능성 검토를 위해 미국 SEC와 함께 기술전문가그룹을 공동으로 이끔;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llaborations”(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AS는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 부의장이며 “Plus Standard”를 개발하는 작업반의 의장; “The taxonomy will serve as ASEAN's overarching guide and common language for sustainable finance.”. ↩

5. World Bank, “Singapore: Overview”(worldbank.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1966년 8월 3일 IBRD의 104번째 회원국이 됨; 회원 가입 전 1963년과 1966년에 차관을 받았으며, 첫 차관은 영국 정부가 보증; “Between 1963 and 1975, Singapore received 14 loans from the Bank, primarily to strengthen its infrastructure”; 마지막 융자는 1975년; 모든 차관은 1980년대 중반까지 상환. ↩

6. World Bank, “Singapore: Overview” 및 국가 페이지 “Singapore”(worldbank.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Bank established its Singapore Office in 1999 to promote knowledge exchange with local and regional partners”; IFC와 MIGA는 2011년에 합류, “and in 2026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Disputes (ICSID)”; 그룹 전체가 입주한 “the first and only World Bank Group office outside of Washington, D.C.”; “In 2015, the Hub evolved into the World Bank Group–Singapore Hub for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the Singapore Hub employs more than 300 staff members from the World Bank, IFC, MIGA, and ICSID”; “Singapore is a member of all five World Bank Group institution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nternational Cooperation”(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World Bank-Singapore Hub for knowledge and financial activities for Asia and beyond”; “This marks the first combined World Bank Group office of its kind outside Washington DC.”.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ICSID, 보도자료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Launches Office in Singapore”, 2026년 8월 26일(icsid.worldbank.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8월 25일 법무부와 체결한 의향서에 따라 에드윈 통 SC 법무장관과 마르티나 폴라섹(Martina Polasek) 사무총장이 사무소를 공식 개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 “The Singapore Office is ICSID's first staffed office outside its Washington, D.C. headquarters.” ↩
8. 역내 인프라 개발 및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2018년에 설립한 인프라스트럭처 아시아(Infrastructure Asia)에 관해서는 2018년 4월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의 발표 참조. ↩
9. Wikipedia, “Interpol”(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글로벌 혁신단지는 “was officially opened in April 2015”, “to act as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y, and a place of cooperation on digital crimes investigations”를 위해 건립; “Interpol currently has 196 member countries”. ↩
1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Singapore Office”(wipo.int,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WIPO Singapore Office serves the ASEAN region by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P in business success”; “Singapore Office of WIPO's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관한 언급. ↩
11. 2017년 싱가포르와 상설중재재판소 간의 유치국 협정 및 2018년 싱가포르 PCA 사무소 개소, 그리고 2018년에 개소한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 사건관리 사무소에 관해서는 PCA(pca-cpa.org) 및 ICC(iccwbo.org) 페이지 참조. ↩
12.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About ISDA”(isda.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ince 1985, the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has worked to make the global derivatives markets safer”; “ISDA has over 1,000 member institutions from 79 countries”; 제41차 연차총회는 2027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3.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Act 1948(2020 Revised Edition), 명령에 의한 특권과 면제의 부여에 관한 규정 및 관련 하위 법령.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